

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의결 년월일	제516호 2006. 6. 16. (제127회)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6. 8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시정소식지의 규격을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, 발간순기를 월간으로 변경하는 등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시정소식지의 규격을 “4×6배판 책자형”에서 “타블로이드판 신문형”으로 변경하고, 발간순기를 “월간 또는 격월간”에서 “월간”으로 변경함.(안 제3조)
- 나. 시정소식지 편찬을 위하여 운영하던 편집주간과 보조원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,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수집,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주부명예기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
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”를 “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편집, 배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중 “18cm×25cm(4×6배판) 책형”을 “타블로이드판 신문형”으로, “월간 또는 격월간”을 “월간”으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게재내용) 국·도정소식, 시정주요시책, 공지사항, 문화예술행사 및 기타 시정정보 등을 게재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

1. 시정소식지 명칭에 관한 사항
2. 편집내용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3. 발행순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
4. 기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주부명예기자) 시장은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발굴,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 등을 위하여 주부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</u></p>	<p><u>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 시정소식지를 발간 배부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편집, 배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3조(규격 및 발간순기) 시정소식지의 규격은 18cm×25cm(4×6배판)책형으로 하고, 발간순기는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규격 및 발간순기) ----- -----<u>타블로이드판</u> <u>신문형</u>----- <u>월간</u> -----.</p>
<p>제5조(기재내용) 국·도정 주요 시책, 주요시정, 시사해설, 시민공지사항, 문예교양 소식, 기타 시민계도가 요구되는 홍보사항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기재내용) 국·도정소식, 시정주요시책, 공지사항, 문화예술 행사 및 기타 시정정보 등을 게재한다.</p>
<p>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정홍보 명칭의 심의조정 2.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3. 발행순기 및 규격의 심의조정 4. 편집방법 및 배포 5. 기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	<p>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정소식지 명칭에 관한 사항 2. 편집내용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. 발행순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 4. 기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

제8조(편집주간 및 보조원) ①시정

소식지의 편찬을 위하여 발행
부서에 편집주간과 보조원을 둘
수 있다.

②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는
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
각호의 정액보수를 지급할 수
있다.

1. 주간 : 지방별정 6급 15호봉
상당 1명

2. 보조원 : 지방별정 7급 15호
봉 상당 1명

③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
하는 보수 및 수당과 복리후생
비의 범위, 방법 등은
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
수당규정과 지방자치단체
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.

④편집주간 및 보조원이
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
출장할 때에는 예산의
범위안에서
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
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
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주부명예기자) 시장은 지역

소식과 미담사례 발굴, 시책의
효율적인 홍보 등을 위하여
주부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.